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210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1월 08일

발 의 자 : 전병주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김재형,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석주, 이호대,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최기찬,
추승우, 황인구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 3조).
- 나.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마. 디지털 리터러시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바.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0122200000002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전병주 의원

담당 : 남승우 과장
이정수 팀장
원동아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0.12.22.

회신일 : 2020.12.22.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0조(수당)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11조(연수), 제12조(재정지원), 제13조(협력체계 구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과학영재정보화교육팀에서 ‘디지털 시민성 역량 함양’,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및 참고자료 첨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0조(수당)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5,500천원(연평균 5,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500천원으로 연평균 5,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1명,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에 관한 전문가 14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함

-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5,500천원(연평균 5,100천원)

- 총비용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비

= 25,500천원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년도 (2021년) | 2차년도 (2022년) | 3차년도 (2023년) | 4차년도 (2024년) | 5차년도 (2025년) | 합 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 (a) | - | - | - | - | - | - |
| 세출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안제5조) | 5,100 | 5,100 | 5,100 | 5,100 | 5,100 | 25,500 |
| | 소계 (b) | 5,100 | 5,100 | 5,100 | 5,100 | 5,100 | 25,500 |
| 총비용 (b-a) | | 5,100 | 5,100 | 5,100 | 5,100 | 5,100 | 25,500 |

○ 자문위원회 설치·운영비 ≙ 25,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4,200천원 + 900천원
≙ 5,100천원

· 연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4명 × 150,000원 × 2회
= 4,2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
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15만원으로 운용할 예정임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을 제외한 14명 지급 전체

· 연간 자문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명 × 30,000원 × 2회
= 9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
| 담 당 관 | 남승우 |
| 사업평가팀장 | 이정수 |
| 주 무 관 | 원동아 |

☎ 02-2180-7953
e-mail : dongyal@seoul.go.kr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 구분 |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 2021년 예산 | 사업내용 |
|-------------------------------------------|----------------------------------------------------------------------|-------------|---------------------------------------------------------------------------------------------------------------------------------------------------------------------------------------------------------------------------------------------------------------------------------------------------------------------------------------------------------------------------------------------------------------------------------------------------------------------------------------------------------------------------------------------------------------|
| 제11조(연수), 제12조(재정지원),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시민성역량함양 (교육자료개발및배포 : 1,980천원)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 : 36,620천원) | 38,600 | <p>사업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신장 -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 제공 -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 관련 교육 및 지원 활동 <p>(교육자료개발및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초, 중, 고 학생, 교사 - 내용 : 학교 수업과 교사용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배포 - 소요예산 : 1,980천원(안제11조 및 제12조 해당) <p>(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초, 중, 고 학생, 교사 - 내용 : 정보통신윤리 자료 개발 및 배포, 학부모 연수 진행(안제8조 해당) - 소요예산 : 36,620천원(안제11조 및 제12조 해당) |
| | 학교미디어교육센터운영 (학교미디어교육센터운영 : 100,000천원) | 100,000 | <p>사업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능동적·창의적 시민성 육성 및 지역 간 미디어 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p>(학교미디어교육센터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학교미디어교육센터 협력 기관에 위탁 운영 - 내용 : 미디어 관련 교사 및 학생 체험 활동 실시,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안제13조 해당)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자료 :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